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최상국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
조례 근거 개정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
 - 제1조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→ 제51조
 - 제2조제3호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 → 제126조, 제116조 →
제129조
 - 제2조제5호 : 법 제117조 → 제131조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, “제116조”를 “제129조”로 한
다.

제2조제5호 중 “제117조”를 “제131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<u>제5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범위)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회 또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2.(생략) 3.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. (생략) 5.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	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제 1 2 6 조</u>-----<u>제 1 2 9 조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제131조</u>-----

□ **지방자치법(시행 2022.1.13.) [2021.1.12., 전부개정]**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1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